

구제역 52일만에 종식, 평시방역 대폭 강화로

김동태 농림부장관은 지난 5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경기도 안성 등 4개 시·군에서 총 16건이 발생했던 금년도 구제역이 최초 발생 52일만에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지난 8월 14일 발표했다.

* 경기도 안성 9건, 용인 4, 평택 1, 충북 진천 2(돼지 15, 젖소 1)

그동안 발생지역(반경 3km : 위험지역, 3~10km : 경계지역)에 대해 취해왔던 가축 이동제한 등 집중 방역조치는 지역별 정밀검사를 거쳐 이미 8월 7일 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해제된 바 있고,

- 진천지역 : 최종 살처분 5.15일/경계지역(6.15), 위험지역(6.24)해제

- 평택지역 : 최종 살처분 6.6일/경계지역(7.12), 위험지역(7.20)해제

- 안성·용인 : 최종 살처분 6.24일/경계지역(7.25.28), 위험지역(8.7)해제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5개 농가를 선정·특별관리

하면서 추가검사(프로방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3개 농가는 8월 10일, 2개 농가는 8월 13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날 전국적인 종식선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김 장관은 구제역을 종식하기까지 방역에 적극 협조한 농가와 군·경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약 16만두(162농가)의 우제류 가축을 도살·매몰하여 약 531억원의 살처분 보상 및 오염물건 보상소요가 발생하였고, 이동통제초소(최



▲ 구제역으로 인해 거품 섞인 침을 훌리는 젖소

대 119개소) 운영과 살처분 작업 등에 연 인원 95,588명의 군.경과 관련 공무원 48,240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군병력의 적극적인 협조로 살처분·매몰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진 점이 이번 구제역 종식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구제역 피해 농가들이 빠른 시일내에 생업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구제역 방역비용 추정(총 1,429억 원) : 살처분 등 보상금(531), 소독약품 등 방역비(123), 생활안정자금(15), 가축입식 및 경영안정 자금 융자(392), 가축수매 자금(337),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31) 등

한편, 구제역이 종식됨에 따라 평시 방역체계 강화와 구제역 청정국 인증 신청 등 구제역 이후 후속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농림부는 우리나라가 중국·러시아·대만·몽고 등 구제역 발생국가에 둘러싸여 있고 최근 이들 국가와의 인적·물적 교류·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가 위험도별·유입경로별 검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축산 농가에서도 축사내외 주기적인 소독은 물론 금번 구제역 유입경로 및 전파원인으로 추정되는 해외여행객,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 구제역으로 인해 발굽이 궤양된 돼지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방역 제도개선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축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현재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제역 방역 현장 경험을 토대로 평시방역 강화대책을 수립, 이미 일부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6월말에 내한한 외국의 구제역 전문가(호주 Dr. Garner, 미국 Wainwright 등)들은 소보다 바이러스 배출량이 1,000배 이상 많은 돼지 구제역을 이처럼 짧은 기간내에 근절시킨 것은 축하 받을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검역만으로는 구제역과 같은 해외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신고체계의 구축과 함께 양축농가의 협조와 능동적인 방역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농림부는 최종 발생농장에서 살처분이 끝난 6월24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9월24일 이후에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회복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금년 11월말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구제역 및 가축질병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역 청정 지위 복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OIE에서 청정지위를 회복하더라도 양국간 위생조건 협의 및 일본 농림수산성령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일 돈육수출 재개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정국 지위회복 전이라도 돼지고기 수출이 가능한 필리핀·러시아 등 일부 수입국과는 현재 수출재개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1. 구제역 평시 방역강화대책

[위험도 및 유입경로로 추정되는 우선 순서대로 대책 수립]

▣ 질병 유입경로별 및 전파 위험도별 대책 추진

① 사람 : 외국 축산행사 참석자, 농가 해외 단체여행자, 농가고용 외국인 관리 철저

⇒ 검역원은 명단 입수, 입국시 공·항만에서 농장 방문자 소독 등 특별검역

② 차량 : 차량에 소독기구 장착 및 소독 의무화로 철저 관리

* 야생조수류 관리 철저 : 야생멧돼지 및 까치·비둘기 검사 강화

▣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고취 및 유도

③ 농장주·관리인 : 질병증상·신고종요성 방역교육 등 관리 철저

④ 농장관리 : 출입통제 시설·소독기

구 설치 유도 및 소독 사항 감독

▣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⑤ 소독의날 운영 내실화 : (현행) 년 27회 → (개선) 매주 실시

* 정부지원은 현행과 같이 연간 27회, 기타 농가 자율 추진

⑥ 「구제역특별대책」기간 변경 : (현행) 2~4월 → (변경) 3~5월

⑦ 민간자율방역 활성화 : 시군에서 「지역방역협의회」를 단체·협회장위주로 구성, 방역업무 분담 등 협조 유도

▣ 기타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미비점 보완

⑧ 검역 : 탐지견 투입확대(6두→12), X-ray 검색철저(16대), 개봉검사 강화(세관→세관·검역원), 발판소독조(310개) 관리철저 등

⑨ 방역 : 우려지역 26곳 집중관리, 혈청검사 강화 예방적 방역, 공무원·농장주·고용인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

2. 법령 개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농가 자율방역 책임 명문화, 농장 질병관리 등급제 도입

전염병 신고지연농가 사육시설 폐쇄, 살처분 농가 생계비 지원 등

▣ 축산법

질병관리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축산농가 등록제 도입